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3147

제출연월일 : 2025. 8. .
제 출 자 : 하 남 시 장

1. 제안이유

○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을 위한 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소외된 체육인들에게 기회를 제공

2. 주요내용

가. ‘체육인’의 정의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 중 하남시장이 인정한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함.

나.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신청 서류를 추가함

3. 개정조례안: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덧붙임(비용추계서)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5. 7. 18.~2025. 8. 8.(21일간)

나. 의견 내용: 해당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 중 하남시장이 인정한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체육진흥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 성명	체육진흥과장 유 지 연
	팀장 직위 · 성명	체육정책팀장 조 일 수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민 준 구 (031-790-6206)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1.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 중 하남시장이 인정한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 4. (생 략)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별지 서식】(제1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하남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전문선수로 등록된 사람 중 개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하남시 거주자(2025년 기준 161명 예상)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추진에 따른 도비 보조금 확보 고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소요액		**241,500**	**264,000**	**286,500**	**309,000**	**331,500**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사업	도비	120,750	132,000	143,250	154,500	165,750
	시비	120,750	132,000	143,250	154,500	165,750
지급대상		161명	176명	191명	206명	221명
1인당 지급액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다. 재원조달방안: 2025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완료

○ 도비 확보 및 시비 자체 조달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자치행정국 체육진흥과장(유지연)

【별지 서식】(제2면)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5년)	2차연도 (2026년)	3차연도 (2027년)	4차연도 (2028년)	5차연도 (2029년)	계
세 입		**120,750**	**132,000**	**143,250**	**154,500**	**165,750**	**716,250**
도비 보조금		120,750	132,000	143,250	154,500	165,750	716,250
세 출		**241,500**	**264,000**	**286,500**	**309,000**	**331,500**	**1,432,500**
기회소득 지급		241,500	264,000	286,500	309,000	331,500	1,432,500
재원 조달		**120,750**	**132,000**	**143,250**	**154,500**	**165,750**	**716,250**
의존 재원	소 계	120,750	132,000	143,250	154,500	165,750	716,250
	보조금	120,750	132,000	143,250	154,500	165,750	716,250
	지방교부세	-	-	-	-	-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지방세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관계법령 발췌서

1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시행 2025. 5. 7.] [경기도조례 제8437호, 2025.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25.5.7.]
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체육인 기회소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매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 금액·방법·시기
3.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의 재원을 분담하는 시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세부 지급기준은 기본계획을 따른다.

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신청)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 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 [신설 2025.5.7.]
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 [제2호에서 이동 <2025.5.7.>]
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5.5.7.>]
5. 그 밖에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호에서 이동 <2025.5.7.>]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10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도지사는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 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평가) 도지사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제1

1조에 따른 사업평가 등의 사무를 체육인 기회소득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